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3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김예지·강대식·최수진

박덕흠 • 백종헌 • 박충권

유용원 • 김미애 • 장동혁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군복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제도를 도입·운영 중임.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크레딧으로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함. 이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존재하였던 방위병의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 군 복무기간이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할 것임.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18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을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기간 추가 산입)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			
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6개월</u> 을 가입기	<u>그</u> 병역의무를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u><후단</u>	<u>수행한 기간</u>		
<u>신설></u> <u>다만, 「병역법」에 따</u>			
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	때에는 1개월로 한다. <단서		
<u>지 아니한다.</u>	<u>삭제></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